

2026년도 제3회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우정인재개발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15일
우정인재개발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가. 선발예정직급: 우정9급 우정서기보(집배)

나. 선발예정인원: 총 218명(일반 208명, 장애 9명, 저소득 1명)

근무예정기관	모집구분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모집구분	선발예정인원
서울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17국)	일 반	37	경인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24국)	일 반	70
	장애인	1		장애인	3
	저소득	1		소 계	73
	소 계	39		일 반	24
부산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22국)	일 반	38	충청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13국)	장애인	1
	장애인	3		소 계	25
	소 계	41		일 반	17
	일 반	12		소 계	17
전남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8국)	장애인	1	경북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12국)	일 반	5
	소 계	13		소 계	5
	일 반	3		일 반	2
	소 계	3		소 계	2
전북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3국)	일 반	3	강원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4국)	일 반	2
	소 계	3		소 계	2

☞ 선발단위별 모집구분표(모집우체국, 선발예정인원) “붙임1” 참조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 우정사업본부의 타 기관(총괄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서울지방우정청 ‘일반’ 모집구분 최종합격자는 다른 지방우정청 전보 시에만 전보 제한(4년) 적용

2 임용예정직무

- 담당업무: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직무기술서"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균형인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3"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지역제한:** 공고일('26. 7. 15.) 현재 응시하는 지방우정청 거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서울·경인지방우정청 지역제한 없음)

모집우정청	거주지역	모집우정청	거주지역
서울,경인지방우정청	제한없음	부산지방우정청	부산, 울산, 경남
충청지방우정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지방우정청	전남광주
경북지방우정청	대구, 경북	전북지방우정청	전북
강원지방우정청	강원	제주지방우정청	제주

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구분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 가능하나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가유공자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

<유의사항>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일반 구분모집에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 가능하나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각 1통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각 1통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증빙서류 첨부
 - 군복무: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교환학생: 학교 발급 서류(교환학생으로 해외 체류한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 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발급담당자가 증명서에 수급기간(개시, 중단 이력 포함)을 명시하고, 담당자 직급·성명·확인(도장 또는 서명)·연락처를 기재한 증명서 제출

라.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아래의 두 가지(①, ②)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 ②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J조건 제외)

마.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세부내역	
관련분야* 경력	○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 응시자격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이후의 근무경력만을 인정 ※ 총 경력 1개월 이상에 대해 배점	
음주·무면허운전 無 경력	○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경력(전체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 인정 자격증 ※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시행기관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3급 이상

- 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의 근무 경력만을 인정함
- (유의사항) 원서접수 시 우대요건의 해당 내용을 등록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대요건으로 인정 불가

[경력 관련분야 정의]

○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 단, 우체국소포원 · 특수지 집배원 경력 및 舊재택위탁배달원의 '20년 이전 경력은 우정직(집배) 업무와 유사한 경력으로 50%만 적용된 환산경력으로 인정

* 근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 소포업무 인정기준

- ① 소형의 ② 다양한 물품을 ③ 발송인(수탁자)과 택배업자가 일정한 계약(접수)을 통해 ④ 운송 등을 위해 포장을 하고 ⑤ 부착된 운송장(기표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⑥ 다수의 수취인(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 소포업무가 아닌 특정 물품의 배송업무, 퀵서비스, 대형마트 주문배송 또는 내근 직종의 근무 경력 불인정

바. 가산요건

- 적극적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급 이상,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시스템에 정확히 등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적극적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

- (유의사항) 원서접수 시 가산요건의 해당 내용을 등록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산요건으로 인정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및 가산비율 등록

◇ 기 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후 시스템에 가산점 등록 완료

◇ 신청방법: 원서접수 시, 해당 항목 등록 후 증빙서류 제출

◇ 가산요건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 등급별 가산점 부여: 고급(1, 2급) 5점, 중급(3, 4급) 4점, 초급(5, 6급) 3점

2.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5% 또는 3%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참고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선발단위**에만 가산점을 적용함
 - * (서울청) 모집구분 일반(통합 선발단위) / (경인청) 남인천, 성남, 성남분당, 안산, 용인수지, 용인, 남양주, 이천, 안성 / (부산청) 울산, 양산 / (충청청) 서청주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1577-0606)에 확인

②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참고사항>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선발단위**에만 가산점을 적용함
 - * (서울청) 모집구분 일반(통합 선발단위)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5)에 확인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음주·무면허 운전 無경력, 자격증), 가산요건(가산점)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하는 개별면접 실시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1.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 1인당 과반수가 평정 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2인 이상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7.15.(수)	'26.7.23.(목) 09시 ~ 7.27.(월) 18시 * 접수취소 7.30.(목) 18시까지	'26.9.7.(월)	'26.9.12.(토), 9.14.(월)	'26.9.23.(수)

[모집청별 면접시험일(예정)]

면접시험일	모집우정청
'26. 9. 12.(토)	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 부산지방우정청, 충청지방우정청, 경북지방우정청
'26. 9. 14.(월)	전남지방우정청, 전북지방우정청, 강원지방우정청, 제주지방우정청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표는 '26. 8. 10.(월) 09:00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서 출력 가능하며, 면접시험 당일 소지하여야 함
※ 응시표 출력: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마이페이지→ 응시현황→ 원서접수내역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 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며,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안내 예정임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7. 23.(목) 09시 ~ 7. 27.(월) 18시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인터넷으로 접수(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주소: gongmuwon.gosi.kr
※ 반드시 제출서류(붙임4, p.23)를 확인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5,000원

<참고사항>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로 처리됩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응시원서 접수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④ 「민법」상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나. 유의사항

[응시자격 취득예정자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원서접수 시, 응시 자격요건 중 하나의 자격(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 ▶ 최종시험(면접)일에 미취득 자격(운전면허)에 대한 취득증명 서류 제출
 - 취득증명 미제출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자격(운전면허) 취득예정자의 원서 접수방법은 [별첨]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원서접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선발단위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분야의 근무예정지와 모집구분을 정확히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內,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비용을 제외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기간 7. 30.(목) 18:00까지
- 제출된 증빙서류는 필요시 관계기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8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4(p.22)”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자기소개서	제시된 질문(p.23~24) 참고 하여 2,000자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전체 기재본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 상세 직무 표기하여 발급	발급기관 직인 필수(pdf파일)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확인서)	시행기관별 제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의사상자 등 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저소득층 증명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대상 서류는 정부24에서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경력(재직)증명서 제외)

※ 열람용 제출서류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유의사항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주소 변동 이력·병역 확인 불가,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또는 열람본 제출 등) 제출, 사진 촬영 등으로 제출하여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따른 불이익(서류전형 불합격, 우대조건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관련 안내 사항

– 기관·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행기관의 증명(직인 날인)이 있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해야 함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명시
-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또는 모호할 경우, 발급부서 확인(서명) 또는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 ▶ 제출한 경력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4대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는 절차가 있음
-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은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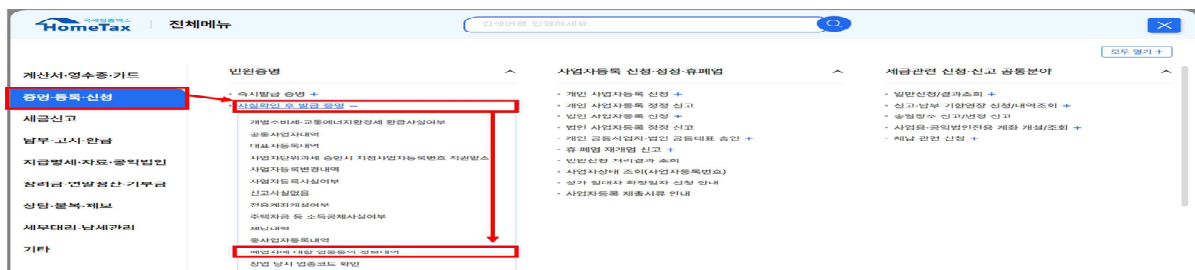
* 아래의 ①, ②, ③, ④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② 폐업사실증명서
- ③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 ④ 소득금액증명서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자격증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J조건 제외) 소지자로서 실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방청별 업무 물량]

모집청	업무 물량
서울지방우정청	- 일평균 700여통 이상(최빈기 750통)의 통상우편물과 20Kg내외(최고 30Kg)의 다량 소포
경인지방우정청	- 일평균 650여통 이상(최빈기 750통)의 통상우편물과 20Kg내외(최고 30Kg)의 다량 소포
부산지방우정청	- 일평균 600여통 이상(최빈기 700통)의 통상우편물과 20Kg내외(최고 30Kg)의 다량 소포
충청지방우정청	- 일평균 650여통 이상(최빈기 750통)의 통상우편물과 20Kg내외(최고 30Kg)의 다량 소포
전남지방우정청	- 일평균 600여통 이상(최빈기 700통)의 통상우편물과 20Kg내외(최고 30Kg)의 다량 소포
경북지방우정청	- 일평균 550여통 이상(최빈기 650통)의 통상우편물과 20Kg내외(최고 30Kg)의 다량 소포
전북지방우정청	- 일평균 550여통 이상(최빈기 700통)의 통상우편물과 20Kg내외(최고 30Kg)의 다량 소포
강원지방우정청	- 일평균 550여통 이상(최빈기 650통)의 통상우편물과 20Kg내외(최고 30Kg)의 다량 소포
제주지방우정청	- 일평균 700여통 이상(최빈기 750통)의 통상우편물과 20Kg내외(최고 30Kg)의 다량 소포

※ 업무 물량을 이륜자동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배달하기 위한 체력 필요

-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화요일~토요일(5일) 근무, 월요일 휴무
- 원서접수 시 기재 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콜센터 (☎ 1800-6634)
- 기타 시험 관련 문의: 우정인재개발원 인재채용팀 (☎ 041-560-5801)

10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시험시 장애인 응시자의 공정한 시험응시 기회보장을 위해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제공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신청방법 공지 예정
 - 제출서류: 편의제공 신청서(별도 안내), 장애인등록증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편의제공 내용
지체장애	상지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하지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장애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시각장애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청각장애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기타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붙임 1

선발단위별 모집구분표

모집우정청	구 분	선발단위(우체국)	선발예정인원(명)
서울지방우정청	일 반	서울지방우정청 관할 총괄우체국(17개국)	37
	장애인	서울중앙	1
	저소득	서울중앙	1
	소 계	3	39

< 서울지방우정청 관할 총괄우체국(17국) 내역 >

번호	우체국명	번호	우체국명
1	서울중앙우체국	10	서울강서우체국
2	서울광진우체국	11	서울동작우체국
3	서울마포우체국	12	서울서초우체국
4	서울관악우체국	13	서울용산우체국
5	서울은평우체국	14	서울노원우체국
6	서울강남우체국	15	서울중랑우체국
7	서울성북우체국	16	서울도봉우체국
8	서울강동우체국	17	서울구로우체국
9	서울양천우체국		

※ '서울지방우정청 / 일반 모집구분'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근무 희망관서(1,2순위) 기재
 - 기재방법: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경채시험 원서접수 매뉴얼(별첨) 참조

모집우정청	구 분	선발단위(우체국)	선발예정인원(명)
경인지방우정청	일 반	인천	2
		인천계양	1
		남인천	4
		인천남동	2
		의정부	1
		수원	1
		군포	3
		안양	2
		성남	4
		성남분당	4
		부천	3
		안산	5
		고양덕양	3
		용인수지	4
		용인	4
		남양주	4
		평택	2
		화성	3
		이천	6
		안성	5
		포천	2
		경기광주	3
		양주	1
		여주	1
	장애인	의정부	1
		수원	1
		고양덕양	1
	소 계	27	73
부산지방우정청	일 반	해운대	1
		부산	1
		동래	2
		남부산	2
		부산금정	1
		부산진	1

모집우정청	구 분	선발단위(우체국)	선발예정인원(명)
		부산연제	1
		부산영도	1
		울산	5
		남울산	1
		마산	2
		창원	2
		김해	2
		양산	4
		거제	2
		통영	3
		동울산	1
		밀양	1
		사천	3
		의령	1
		하동	1
	장애인	해운대	1
		부산사상	1
		동울산	1
	소 계	24	41
충청지방우정청	일 반	대전대덕	1
		대전둔산	3
		천안	1
		동천안	2
		공주	2
		논산	1
		서산	1
		청주	2
		서청주	5
		충주	2
		홍성	2
		단양	1
		진천	1
	장애인	천안	1
	소 계	14	25

모집우정청	구 분	선발단위(우체국)	선발예정인원(명)
전남지방우정청	일 반	북광주	2
		서광주	1
		광주광산	1
		목포	1
		여수	3
		보성	1
		진도	1
		해남	2
	장애인	광주광산	1
소 계		9	13
경북지방우정청	일 반	동대구	1
		북대구	1
		대구달서	1
		대구수성	1
		포항	3
		안동	2
		김천	3
		상주	1
		문경	1
		울진	1
		청도	1
		영양	1
	소 계	12	17
전북지방우정청	일 반	전주	1
		동전주	1
		익산	1
	소 계	3	3
강원지방우정청	일 반	속초	2
		동해	1
		영월	1
		횡성	1
	소 계	4	5
제주지방우정청	일 반	제주우체국(도서:추자도)	1
		제주우편집중국	1
	소 계	2	2
합 계		98	218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지급	선발예정인원
인천우체국 등 105개 우체국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우정9급(집배)	총 218명

주요 업무	○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 우편 차량, 원동기장치 운전 - 관할지역 우편물 구분·수집·배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자료 전산 등록 및 처리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부대업무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무 역량) 안전의식 실천능력, 성실한 업무처리능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고객(민원)응대능력
-------	---

필요 지식	○ 차량 및 원동기장치 운행 관련 지식 ○ 사고예방 및 교통법규 관련 지식 ○ 집배관련 시스템, PDA 장치 사용을 위한 정보화 관련 지식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지식
-------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아래의 두 가지(①, ②)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②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J조건 제외) ※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

우대요건	구 분	세부내역	
	관련분야 경력	○ 우편물 배달,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 응시자격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 ※ 총 경력 1개월 이상에 대해 배점 ○ 관련분야: 우편물 배달 · 수집 또는 소포(민간택배 포함) 업무	
	음주·무면 허운전 無 경력	○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경력(전체경력)을 확인(감점식)	
	자격증	○ 인정 자격증 ※ 유리한 자격 1개만 인정	
		시행기관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3급 이상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6급 이상 인증서 보유 시: 3~5점 차등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5점 또는 10점 부여 ○ 의사상자 등 대상자: 3점 또는 5점 부여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4

제출서류 안내

- ※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발급대상 서류는 정부24에서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하여 제출합니다.(경력(재직)증명서 제외)
- ※ 열람용 제출서류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경력(재직)증명서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스캔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예, 주소 변동 이력·병역 확인 불가,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 등) 제출, 사진 촬영 등으로 제출하여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따른 불이익(서류전형 불합격, 우대조건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구분	서류목록		내 용						
공통 사항 (필수 제출)	1	[필수] 자기소개서	- 붙임5(p.23~24)에 제시된 질문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직접 입력						
	2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3	[필수]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26. 7. 15.) 이후 발급 - 전체본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변동 이력 기재)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4	[필수] 운전경력증명서	- 공고일(26. 7. 15.) 이후 발급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관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운전면허경력」란에 면허취득일자가 반드시 표기						
개별 사항 (해당 자에 한함)	5	경력(재직)증명서	○ (p.12 확인) 기관·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pdf) - 사업장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해야 함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출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6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확인서)	○ 시행기관별 발급하여 제출 <table><tr><th>시행기관</th><th>자격증</th></tr><tr><td>한국산업 인력공단</td><td>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td></tr><tr><td>대한상공 회의소</td><td>유통관리사 3급 이상</td></tr></table>	시행기관	자격증	한국산업 인력공단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대한상공 회의소	유통관리사 3급 이상
	시행기관	자격증							
	한국산업 인력공단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물류관리사							
	대한상공 회의소	유통관리사 3급 이상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9	의사상자 등 대상자증명서							
10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 (p.3 반드시 확인) 필요시 개별 안내 ※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해당							
11	장애인증명서 등								
12	저소득층증명서	○ (p.3~4 반드시 확인) 필요시 개별 안내 -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사전 준비 ※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 해당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질문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직접 입력

※ 작성기준: 기본글꼴, 글자크기 18p, 글자색 검정, 2,000자 이내로 작성

1. 우정9급(집배) 공무원에 지원한 동기를 작성해 주십시오.
2. 자신의 장·단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작성해 주십시오.
3.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작성해 주십시오.
(낮선 환경에서의 적응,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 등)
4. 위 제시된 질문 외에 전하고 싶은 본인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질문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직접 입력**

※ 작성기준: 기본글꼴, 글자크기 18p, 글자색 검정, **2,000자 이내로 작성**

1. 집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성실성 및 책임감, 고객지향 마인드, 안전의식 및 위기관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등)

2.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의 업무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3. 우정9급(집배) 공무원 임용 후 포부나 각오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